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3159-342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19.(목)	2026.11.30.(월)	2026.12.01.(화)	2026.12.02.(수)	2026.12.09.(수)	2026.12.11.(금)~ 2026.12.13.(일)	2026.12.21.(월)~ 2026.12.23.(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2-3159-3428)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gy-thehue.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9.(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30.(월)	2026.12.01.(화)	2026.12.02.(수)	2026.12.09.(수)	2026.12.11.(금)~ 2026.12.13.(일)	2026.12.21.(월)~ 2026.12.23.(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2.09.)로부터 1년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11525호(2026.11.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층, 4개동 총 272세대[조합 167세대, 보류지 3세대] 중 일반분양 102세대
[특별공급 61세대(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16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8세대, 신생아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85	01	059.8728	59	59.8728	19.8565	79.7293	49.3094	129.0387	35.1544	26	3	3	5	1	3	4	19	7	2
	02	071.9348	71	71.9348	20.7750	92.7098	59.2434	151.9532	40.8777	45	5	4	6	2	3	4	24	21	4
	03	084.9614	84	84.9614	21.6469	106.6083	69.9717	176.5800	47.0059	31	3	4	5	1	2	3	18	13	8
	합 계									**102**	**11**	**11**	**16**	**4**	**8**	**11**	**61**	**41**	**1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 및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수가 자동 배정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102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59.8728	071.9348	084.9614
약식표기	59	71	84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	71	84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1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2**
	장애인 경기도	1	1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1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50%)	2	2	2	**6**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	2	2	**5**
신혼부부 특별공급		5	6	5	**1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1	**4**
생애최초 특별공급		3	3	2	**8**
신생아 특별공급		4	4	3	**11**
합 계		**19**	**24**	**18**	**6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7-05-17	2027-09-17	2028-01-17	2028-05-15	2028-09-15	2029-01-15	입주지정일
59	26	103동 1,2호 104동 5,6호	1층	2	299,630,000	299,630,000	599,260,000	10,000,000	19,963,000	59,926,000	59,926,000	59,926,000	59,926,000	59,926,000	59,926,000	209,741,000
			2층	4	302,750,000	302,750,000	605,500,000	10,000,000	20,275,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211,925,000
			3-5층	8	312,115,000	312,115,000	624,230,000	10,000,000	21,211,500	62,423,000	62,423,000	62,423,000	62,423,000	62,423,000	62,423,000	218,480,500
			6-9층	2	315,235,000	315,235,000	630,470,000	10,000,000	21,523,500	63,047,000	63,047,000	63,047,000	63,047,000	63,047,000	63,047,000	220,664,500
			10-17층	10	322,360,000	322,360,000	644,720,000	10,000,000	22,236,000	64,472,000	64,472,000	64,472,000	64,472,000	64,472,000	64,472,000	225,652,000
71	45	102동 3,4호 104동 3,4호	1층	4	343,265,000	343,265,000	686,530,000	10,000,000	24,326,500	68,653,000	68,653,000	68,653,000	68,653,000	68,653,000	68,653,000	240,285,500
			2층	4	346,840,000	346,840,000	693,680,000	10,000,000	24,684,000	69,368,000	69,368,000	69,368,000	69,368,000	69,368,000	69,368,000	242,788,000
			3-5층	11	357,570,000	357,570,000	715,140,000	10,000,000	25,757,000	71,514,000	71,514,000	71,514,000	71,514,000	71,514,000	71,514,000	250,299,000
			6-9층	8	361,145,000	361,145,000	722,290,000	10,000,000	26,114,500	72,229,000	72,229,000	72,229,000	72,229,000	72,229,000	72,229,000	252,801,500
			10-17층	18	364,720,000	364,720,000	729,440,000	10,000,000	26,472,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72,944,000	255,304,000
84	31	101동 2호 102동 6호 104동 1,2호	1층	4	388,925,000	388,925,000	777,850,000	10,000,000	28,892,500	77,785,000	77,785,000	77,785,000	77,785,000	77,785,000	77,785,000	272,247,500
			2층	4	393,835,000	393,835,000	787,670,000	10,000,000	29,383,500	78,767,000	78,767,000	78,767,000	78,767,000	78,767,000	78,767,000	275,684,500
			3층	4	406,170,000	406,170,000	812,340,000	10,000,000	30,617,000	81,234,000	81,234,000	81,234,000	81,234,000	81,234,000	81,234,000	284,319,000
			4층	1	411,170,000	411,170,000	822,340,000	10,000,000	31,117,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287,819,000
			11층	3	422,895,000	422,895,000	845,790,000	10,000,000	32,289,5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296,026,500
		101동 1호, 102동 1,2,5호	1층	4	394,725,000	394,725,000	789,450,000	10,000,000	29,472,500	78,945,000	78,945,000	78,945,000	78,945,000	78,945,000	78,945,000	276,307,500
			2층	4	398,835,000	398,835,000	797,670,000	10,000,000	29,883,500	79,767,000	79,767,000	79,767,000	79,767,000	79,767,000	79,767,000	279,184,500
			3층	4	411,170,000	411,170,000	822,340,000	10,000,000	31,117,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82,234,000	287,819,000
			11층	3	422,895,000	422,895,000	845,790,000	10,000,000	32,289,5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84,579,000	296,026,5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 제60조)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급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 기한 내에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 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 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td></tr>
</table>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구 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자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경기도 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주택형별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경쟁 발생 시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에게 우선), 우선공급 낙첨자가 잔여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abl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td></tr>
</table>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고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고양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td></tr>
</table>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고양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table>
<tr><td></td><td>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고양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td></tr>
</table>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대상자</td><td colspan="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colspan="3">■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able></td></tr>
</table>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고양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고양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2026.11.30.(월) - 청약Home인터넷 : 09:00~17:30 -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14:00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 견본주택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
일반공급	1순위	2026.12.01.(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12.02.(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공고단지
청약연습</td><td colspan="2">-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
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9.(수) ~ 2026.12.18.(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자</td><td>- 제공일시 : 2026.12.09.(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안내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접수 장소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12.11.(금) ~ 2026.12.13.(일) 10:00 ~ 16:00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 견본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 자료 관련 추가 서류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자격 검증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 용도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제출처 :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으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출산이행확인각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가입자 전체(직장+지역),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자격득실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소득 입증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입증 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소유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전국/건축물·토지·주택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 서류 참조
		○	자산가액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가액입증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 서류 참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전체출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전체출력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가입자 전체(직장+지역),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자격득실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소득입증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입증 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으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소유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전국/건축물·토지·주택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 서류 참조
		○	자산가액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가액입증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 서류 참조
신생아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가입자 전체(직장+지역),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자격득실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소득 입증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입증 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 불가 ※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출산이행확인각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소유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전국/건축물·토지·주택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참조
		○	자산가액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가액입증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참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견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일반공급 (가점제)	○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전체출력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전체출력
부적격 의심 세대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고일 이후에 청약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당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I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①,② 해당직장

해당자격		제출 서류	발급처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전직자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I 간이과세자 I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를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뉘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서(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 제출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공개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사실증명서(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③, ④ 해당직장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원본, 직인 날인 필수입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1, 2023년에 소득세 납부한 경우에도 가능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소득세 납부 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 서류**

해당자격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소유증빙)**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③ 행정복지센터
	필수 (자산가액 증빙)	①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 확인가능	①,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kras.go.kr)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해당자격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 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026.12.21.(월) ~ 2026.12.23.(수) 3일간 (10:00 ~ 16:30)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 견본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 용도 :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제출처 : "고양 한신더휴 퍼스트원"으로 설정하여 발급] ※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견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 견본주택 비치
	○		정부 수입인지(인지세)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아파트 공급계약 / 발코니 확장계약 / 추가선택품목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사업주체와 균등(1/2)

					납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한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공급계약 체결 위임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협은행**	**1010-2840-0799**	**행신2의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한신공영(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2동 1101호 홍길동 → "10211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59, 71, 84)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중도금)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 5%(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미납 시 연체료 부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분양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 분양대금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으면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 (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 확장 계약서 /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공급주체(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공급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1. 발코니 확장공사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	15,000,000	1,500,000	13,500,000	-
71	16,000,000	1,600,000	14,400,000	-
84	18,000,000	1,800,000	16,200,000	-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671001-04-074958	한신공영(주)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납부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잔금)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 홍길동" / 102동 1101호 홍길동 → "10211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 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및 슬리브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미선택 시 공간 특성상 유상옵션(추가옵션)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선택		설치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59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LG	3,600,000	360,000	3,240,000
	옵션2	4개소	거실+안방+침실1+침실2		5,900,000	590,000	5,310,000
71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3,700,000	370,000	3,330,000
	옵션2	4개소	거실+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84	옵션1	3개소	거실+주방+안방		5,000,000	500,000	4,500,000
	옵션2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800,000	780,000	7,02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하실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을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유상옵션 선택 및 기계약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천장 냉매배관으로 시공,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무선)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매립 냉매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른 실 이외의 별도의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조합율이 100%가 일부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빌트인 냉장고1	59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LG	5,250,000	525,000	4,725,000
	71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 키큰장(인출서랍)		5,700,000	570,000	5,130,000
	84			5,900,000	590,000	5,310,000
빌트인 냉장고2	71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 키큰장(인출장) + 측면 장식장	LG	6,600,000	660,000	5,940,000
	84			6,700,000	670,000	6,030,000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사양의 냉장고장이 설치 되며, 입주자가 개별 구매하는 가전제품의 규격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71·84타입은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키큰장(선반형)이 함께 제공됩니다.

- 59타입은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키큰장(선반형)이 제공되지 않으며, 기본 냉장고장의 개구부 공간이 타 타입과 상이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며, 제품의 색상 및 설치 순서(배치)는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71·84타입은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1, 빌트인 냉장고2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 71,84타입 빌트인 냉장고2 유상옵션 선택 시 측면 장식장은 내부 조명이 설치되며, 하부장 내부에 조명 안정기함이 설치됨에 따라 해당 부위의 가구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듭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3구 및 인덕션 쿡탑3구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하이브리드 쿡탑	전타입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쿠첸	380,000	38,000	342,000
인덕션 쿡탑	전타입	인덕션 3구	삼성	1,000,000	100,000	900,000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인덕션 쿡탑은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미선택 시에는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되며,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전기오븐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전기오븐	전타입	전기오븐 + 하부 프라이팬 서랍	쿠쿠	500,000	50,000	450,000

- 전기오븐 미선택 시 수납장으로 시공되며, 하부프라이팬 서랍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식기세척기	전타입	12인용(가구도어 부착형)	삼성	1,100,000	110,000	990,000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시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보보	160,000	16,000	144,000

- 비데일체형 양변기 미선택 시 기본 제공 양변기가 설치되며,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유상옵션 미선택시 부부욕실에 시트형 비데가 설치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욕실 복합환풍기	전타입	공용, 부부욕실 복합 환풍기	그렉스	1,300,000	130,000	1,170,000

- 욕실 복합환풍기의 제품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점검구의 크기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욕실 환풍기가 설치되며,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제습환기청정기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습환기청정기	전타입	제습환기청정기	경동나비엔	2,800,000	280,000	2,520,000

- 제습환기청정기 미선택 시 기본 제공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제습환기청정기용 룸콘트롤러로 교체 설치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실내공기질측정(IAQ)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 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격, 디자인, 제품사양 등에 대해 교체 및 수정 요구와 해약이 불가하므로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일부 세대에 한하여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보다 큰 용량의 제품으로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현관 특화1	59	여닫이 중문	1,400,000	140,000	1,260,000
	84	3연동 슬라이딩 중문(수동)	1,150,000	115,000	1,035,000
현관 특화2	59	여닫이 중문 + 고급형 신발장(도어 패턴 변경 및 하부조명) + 현관 시트판넬	1,900,000	190,000	1,710,000
	71	3연동 슬라이딩 중문(수동) + 고급형 신발장(도어 패턴 변경 및 하부조명) + 추가 신발장 + 현관 시트판넬	2,350,000	235,000	2,115,000
	84	3연동 슬라이딩 중문(수동) + 고급형 신발장(도어 패턴 변경 및 하부조명) + 현관팬트리 (가구판넬 추가 및 마감 패턴 변경)	2,380,000	238,000	2,142,000

- 현관 중문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프레임,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 사양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특화 옵션 선택 시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정기가 신발장에 설치되며, 위치 및 상세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급형 신발장에 적용되는 하부조명은 센서 작동 방식이 아니며, 가구 내 별도 스위치로 작동합니다.
- 71타입은 현관 특화2 유상옵션 선택 시 추가 신발장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복도 팬트리 공간이 일부 축소됩니다.
- 71타입은 현관 중문을 별도 유상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침실2 붙박이장**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침실2 붙박이장	전타입	침실2 붙박이장	1,450,000	145,000	1,305,000

- 침실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침실2에 설치되며, 붙박이장의 설치 위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가구의 후면,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미 선택 시 벽면은 벽지로 시공됩니다.

■ **주방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주방특화1	59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2,600,000	260,000	2,340,000
	71		2,700,000	270,000	2,430,000
	84		3,000,000	300,000	2,700,000
주방특화2-1	59	주방 벽,상판 세라믹 타일 + 독립형 렌지후드 + 사각 싱크볼 + 상,하부장 도어 패턴변경 + 상부장 하부 조명 + 벽부형 액세서리 + 주방 상판 콘센트 + 주방 홈바 수납장	7,600,000	760,000	6,840,000
	71	주방 벽,상판 세라믹 타일 + 독립형 렌지후드 + 사각 싱크볼 + 상,하부장 도어 패턴변경 + 상부장 하부 조명 + 벽부형 액세서리 +주방 상판 콘센트	5,200,000	520,000	4,680,000
	84		4,600,000	460,000	4,140,000
주방특화2-2	59	주방 벽,상판 세라믹 타일 + 독립형 렌지후드 + 사각 싱크볼 + 상부장 유리도어, 하부장 도어 패턴변경 + 상부장 내부 및 하부 조명 + 벽부형 액세서리 + 주방 상판 콘센트 + 주방 홈바 수납장	9,300,000	930,000	8,370,000
	71	주방 벽,상판 세라믹 타일 + 독립형 렌지후드 + 사각 싱크볼 + 상부장 유리도어, 하부장 도어 패턴변경 + 상부장 내부 및 하부 조명 + 벽부형 액세서리 + 주방 상판 콘센트	7,400,000	740,000	6,660,000
	84		5,700,000	570,000	5,130,000

- 주방 특화 유상옵션은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주방 특화2-1, 2-2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 하부장 도어 마감 패턴이 변경됩니다.
- 59타입은 주방 특화2-1, 2-2 유상옵션 선택 시 복도 팬트리(가구도어 및 시스템가구)가 미제공 되며, 주방 홈바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59타입 주방 특화2-1, 2-2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홈바 수납장은 상부장 내부 및 하부조명이 설치되며,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정기함이 상부장 내부에 설치됩니다.
- 59타입 주방 특화2-1, 2-2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홈바 수납장의 벽, 상판은 주방 세라믹타일과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 특화2-1, 2-2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상판 콘센트는 본 공사 시 제품의 제조사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2-1, 2-2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 및 스위치는 본 공사 시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디테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2-1, 2-2 유상옵션 선택 시 상부장 내부에 조명 안정기함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해당 부위의 가구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듭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적용되는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의 색상 및 패턴,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 벽은 도기질 타일,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MMA급)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침니형 렌지후드 및 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일반 싱크볼 및 일반형 액세서리가 시공됩니다.
• 평형의 가구마다 크기, 길이가 상이함에 따라 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 **조명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조명 특화	59	거실 우물천장 상하향 등 + 씰링팬 + 아트월 픽쳐레일 일체형 조명	2,000,000	200,000	1,800,000
	71		2,400,000	240,000	2,160,000
	84		2,500,000	250,000	2,250,000

• 조명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아트월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의 제품 규격 및 조명박스 깊이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씰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제품입니다.
• 조명 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씰링팬 제품의 제조사 및 사양(규격, 색상, 하드웨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마감 특화1	59	아트월 세라믹타일	2,900,000	290,000	2,610,000
	71		3,700,000	370,000	3,330,000
	84		3,800,000	380,000	3,420,000
마감 특화2	59	아트월 세라믹타일 + 거실,주방,복도 벽체 시트 판넬	4,900,000	490,000	4,410,000
	71	아트월 및 아트월 연장벽 세라믹타일 + 거실,주방,복도 벽체 시트 판넬	8,100,000	810,000	7,290,000
	84		8,000,000	800,000	7,200,000

• 마감 특화1,2 유상옵션 선택 시 적용되는 세라믹타일 및 시트 판넬의 사양(규격, 색상, 패턴, 나누기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 특화1 유상옵션 선택 시 세라믹타일은 거실 아트월에만 해당되며, 아트월연장벽에는 세라믹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마감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아트월은 포세린타일, 거실·주방·복도 벽체는 벽지가 시공됩니다.
• 마감 특화2 유상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시트 판넬은 타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시공 범위가 달라집니다.
• 평형의 가구마다 크기, 길이가 상이함에 따라 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드레스룸 특화	59	원 슬라이딩 도어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천장형 제습기(코스텔)	2,000,000	200,000	1,800,000
	71	드레스룸 가구도어 마감변경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천장형 제습기(코스텔)	2,600,000	260,000	2,340,000
	84	원 슬라이딩 도어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천장형 제습기(코스텔)	3,500,000	350,000	3,150,000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화장대 및 드레스룸 가구도어 설치되며 드레스룸 내부에는 시스템가구(포스트형)가 설치 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천장형 제습기는 본 공사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커튼박스 내부 마감은 벽지로 시공됩니다.
• 59·84타입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슬라이딩 도어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프레임,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및 제품의 사양(규격, 색상, 포스트 형태, 하드웨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반조명 스위치 및 안정기함이 설치되며, 설치 제품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폭 강마루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타입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광폭 강마루	59	전실 광폭 강마루	285,000	28,500	256,500
	71		320,000	32,000	288,000
	84		400,000	40,000	360,000

• 광폭 강마루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전실 바닥은 기본 강마루로 시공되며, 기본 강마루의 제조사 및 사양(규격, 색상, 재질, 패턴, 나누기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폭 강마루 유상옵션 선택 시 적용되는 광폭 강마루의 제조사 및 사양(규격, 색상, 재질, 패턴, 나누기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671001-04-074961**	**한신공영(주)**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2동 1101호 홍길동 → "1021101홍길동"으로 기재)

11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한신더휴 디자인 및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중이며, 당 현장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디자인, 색채, 패턴, 줄눈, 몰딩, 옥상난간, CI,BI 브랜드 로고, 경관조명, 기타 장식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등이 시공사 디자인 기준으로 변경 시공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동의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이전고시 절차가 지체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법령에 의거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실시설계 인테리어 설계 등에 따라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진행, 설계 및 시공성 개선, 인테리어설계 등의 이유로 벽, 바닥 등 건축물의 구성요소 및 그 형상, 색상, 재질, 마감재를 비롯한 외형과 일부 면적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처리합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당해 정비구역 내 기반 시설(도로, 하수도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정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 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행신2의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혹은 관련 인허가청 협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분양시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한 각종 평가(예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성검토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 내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정비구역 내에 설치하는 도로, 하수도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시설물(도로 또는 하수도 등)이 아니므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단지 주변의 인접 건축물(기존, 신축, 개축 등)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도로, 차량, 항공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일조기준 미달 및 영구음영 세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영구음영 및 일조가 미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도로가 인접하여, 이로 인한 단지 및 인접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일조/채광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시공자,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 단지레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연단차 및 옹벽구간 시공으로 저층부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도로계획은 향후 주변 정비계획변경, 진행정도 등의 사유로 도로선형, 폭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상공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위치한 개방형광장, 보도, 도로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내,외부 일부 구간에 조경석 및 건축옹벽, 자연석 쌓기 등이 설치되며, 추후 인허가 조건,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 및 미관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높이, 옹벽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현황으로는 북서측 (직선거리) 약210m 이내 가람초등학교, 가람중학교, 약500m이내에 남서측 무원고등학교, 동측 서정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지와 인접하여 동측은 25m도로, 서측은 10m도로, 남측 및 북측은 8m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어린이집 관련

- 본 아파트 사업으로 유입되는 취원 대상아는 기존 유아배치시설 내 배치 가능합니다. (덕양 8권역).
- 본 아파트 사업으로 유입되는 초중학생은 기존학교(가람초등학교, 신능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기존 관내 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향후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타 학교군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학군 배정 등은 경기도 고양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며,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 사업장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3항에 따라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지상 17층 규모입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통기관 등의 다수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 옥탑부 장식 구조물 및 경관조명이 설치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준공 시 당 사업장 부지의 확정 경계 및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미술장식품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심의사항입니다.
- 단지 내 배치 구조 및 창호형태(유리난간 설치) 특성상 전 동은 이삿짐 차량 접근 불가 또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주동 진입은 로비로 진입하는 구조이며, 주동 위치에 따라 진입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견본주택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 로비 천장고 : 2.3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저수조, 기계실(근린생활시설용)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근린생활시설, 재활용품보관함,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층 배수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필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방문객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은 북측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하며, 근린생활시설 배면부에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12대(근린생활시설 11대, 새마을회 1대),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근린생활시설 전용공간이 별도로 위치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모형, 도면 등을 참고하시고 양지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배면에 위치한 지상 주차장은 공동주택용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4대)이 함께 위치하여 있으니 이점 양지 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안의 공지선 준수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동측 전면부 진입구는 캐노피 설치가 불가하며, 이점 양지 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획상 도로 레벨 극복을 위하여 단지 내부에 완만한 경사가 존재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입개폐기 및 상가용 변압기),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101동, 102동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주변 도로보다 낮게 위치하여 채광 일조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시설 및 공용공간, 진출입 동선 등의 공동 이용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 및 유무에 따라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의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의 진입, 회전, 정차 등을 위한 협의에 따라 조경 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조경 및 기타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소방 안전매트 설치구간에 의해 저층세대 전면 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이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 사유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단지내 조경공간과 시설물(녹지, 놀이터, 휴게 공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등으로 인한 소음이나 냄새,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심의 조건 사항으로 적용된 흡연공간은 관련 지자체와 재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흡연공간 위치는 수분양자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계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해 정비구역 결정 시 조건 사항으로 102동 전면부(102동과 전면부 사업경계선 사이)에는 개방형 광장이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되며, 개방형 광장의 유지·보수·관리비용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인접한 세대는 공공의 이용에 따라 냄새,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과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주민의 편의 및 자의에 의하여 단지내외 식재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배치 변경하였을 시, 이는 민원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 단지 서측의 10m도로는 단지 레벨보다 높게 형성되어, 레벨 차이 부분에 시선 차단용 식재가 설치되며, 도로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공공의 이용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에 표현된 외관디자인(입면디자인, 색채, 패턴, 줄눈, 몰딩, 옥상난간, CI, BI 브랜드로고, 경관조명, 기타 장식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일부)등은 인허가,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해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 유의사항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동 지하 PIT내부에는 배수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부 PIT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는 현장에 적용되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타입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은 각 동별 지하 1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동체감지시스템은 1,2층, 최상층의 외부 창호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지하 1층 휀룸-3에는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며 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모형의 계단실 창호는 전층이 열리도록 표현되어있으나, 모형, CG 오류에 따른 오표기 사항으로 실제 설치되는 내용은 각동 계단실 창호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3개 층마다 1개소, 최상층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전실 창호는 전층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주동 지상출입구의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이 있는 자동문 슬라이딩&스윙도어, 지하출입구의 슬라이딩 도어에는 강화유리 및 접합유리가 적용됩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주동 출입구 주변으로 주차장 및 발전기실, 전기실 등 급기DA, 배기DA, 제연휀룸용 DA가 설치되어 최하층 일부 세대 및 주동 진출입 시 배기팬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계단실 일부 계단참에 단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는 인허가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및 104동의 전 층(1~17층, 총 17개층) 구간 중 2호 세대(안방)와 3호 세대(침실2) 사이, 그리고 4호 세대(침실2)와 5호 세대(안방) 사이에 발생하는 사공간은 주택공급면적 및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공용부(공동소유 면적)입니다.

■ 단지 내 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DA) 등이 일부 동의 인근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기구의 형태와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주차램프를 통하여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직선 및 곡선 진입하는 구조로 지하 1층 출입구 및 유효높이는 2.7m, 지하 2층 유효높이 2.3m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m이상(일부 장애인통행로 포함)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남측으로 단지 내 주출입구가 1개소, 북측으로 근린생활시설 겸용 차량 출입구가 1개소 설치 될 예정입니다.
- 단지 차량 주차장 출입구는 남측과 북측 출입구에 각각 1개소 위치하며, 아파트 전용 주차장 출입구는 총 2개소가 설치되며, 북측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장(11대), 전기차 주차장(4대), 행신 새마을회 경로당 지상 주차장(1대)와 겸용으로 사용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지상 주차장 내 조업차량 주차구간 및 지하주차장내 차량통행로가 협소한 구간에 배치된 회차공간은 주차가 불가합니다.
-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 및 주동계획 상 전체 동은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보도 등 사용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관련 비상차로는 비상시에 도로 점용이 필요할 수 있고 도로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주변 도로·보도 등에 설치되는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허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의 부과 및 납부 주체는 관계 법령과 허가 조건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외부시설물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개방형 광장, 기계/전기/발전기실, 급배기구(DA),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함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관리사무소, 시니어클럽(경로당), 북클럽(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경비실, 맘스스테이션, 행신 새마을 경로당(부대시설 동 2층 위치),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문주는 남측부 개방형 광장 설치에 따른 형성 공간 부족으로 북측 출입구에 설치되며, 관련 모형 및 도면을 참고하셔서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벤치, 파고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보행로 및 차로 바닥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옥상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배면에 위치한 쓰레기분리수거장, 지상주차장(12대(새마을회 경로당 1대 포함), 조업공간, 회차공간, 전기차 충전소(4대-공동주택용) 등),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 등으로 소음, 냄새, 빛공해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4동 1,2호라인 저층은 근린생활시설 옥상 실외기

설치공간에 따라 조망 및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쓰레기분리수거장 위치를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조경시설 및 편의시설(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의 거리는 해당 호수별로 상이하며, 시공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의 동의 없이 그 규모나 배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3동과 근린생활시설 사이에 위치하며, 인접한 세대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실외기 등 기계장치의 가동에 따라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인접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외관, 조명
- 본 단지의 BI, CI 및 각종 브랜드 로고 표기는 일부 주동 상단부 벽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모형에 표현된 외관디자인(입면디자인, 색채, 패턴, 줄눈, 몰딩, 옥상난간, CI, BI 브랜드로고, 경관조명, 기타 장식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일부)등은 인허가,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해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 외부) 등의 세부디자인은 실시설계 완료 시 확정되며, 상세 변경 반영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게이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은 3개층은 석재 또는 타일, 일부 수성페인트 등 혼합, 4층 이상은 수성페인트 마감이 기본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외부 색상 및 무늬(VEIN)는 마감재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일부 옥상/옥탑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상세 계획은 미정으로, 실 시공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모형, CG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격이 결정되므로, 분양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경관조명,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통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 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BI 위치 및 디자인, 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동측에 부대복리시설과 함께 별동으로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1층에 설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 위치는 지하1층, 지상1층, 지상3층, 지붕층 부분에 나뉘어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근린생활시설 계약자의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실외기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된 위치 외의 장소에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외기 설치 위치의 변경 및 추가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103동 배면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에 설치되며, 대수는 11대(경차 및 장애인, 일반, 확장 포함), 조업하역 공간이 있으며, 공동주택용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4대, 행신 새마을회 경로당 1대도 함께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는 지상층에 별도로 전용 구분/구획 되어 있으나, 통로(보행로 등) 등은 아파트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레벨 차이로 인해 경사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관련 도면, 모형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 대지에 물건의 적치, 시설물 적치, 영업 등을 위한 대지의 사용 및 점용은 불가합니다.
- 인접 도로의 계획 및 공사 환경 변화로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및 접합부 레벨, 경사로, 난간 등이 변경 또는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주 출입구 가감속 차로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나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해 시야 및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 북측 부출입구에 문주가 1개소 설치되며, 문주의 형상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북측 출입구 인근에 1개소씩 경비실 설치됩니다.
- 단지 동쪽에 별동으로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1층)과 함께 주민공동시설은 지상 2층, 지상 3층에 설치되며, 지상 2층은 시니어클럽(경로당) 및 관리사무소, 행신 새마을회 경로당(기부채납시설), 지상 3층에 북클럽(작은도서관 등), 피트니스센터가 설치됩니다.
- 맘스스테이션 및 용역휴게실은 101동 우측에 별동으로 설치됩니다.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내부 집기, 비품, 기구 및 가구류의 종류 및 개수,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하여야 합니다.
- 피트니스센터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피트니스센터의 천장 마감 등은 환경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높이 계획이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센터에 인접한 세대는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시니어클럽(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행신 새마을회 경로당은 인허가 조건사항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로 공동주택과는 별도의 시설로 운영되며, 이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300세대 미만 사업장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3항에 따라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 및 1층 기준층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외벽면에 관리용 사다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한 사항으로 향후 이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해 시야 및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총 2개 층이며, 지하 1층 유효높이는 2.7m이상, 지하 2층 유효높이는 2.3m이상, 주차장 차로 폭은 6.0m이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차대수는 총 396대 설치되며, 공동주택 384대(세대당1.41대 – 지상 1층 : 4대 / 지하층 : 380대), 근린생활시설 주차 11대(지상 1층), 행신 새마을회 경로당 1대(지상 1층)로 별도로 구획/계획되어 있습니다.
-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20개소 [공동주택: 급속 4개소(지상 1층 103동 배면 지상 주차장), 완속 16개소(지하 1층 103동, 104동 인근)]가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분산되어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동 출입은 지하 전체 층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항시 천장 유인휀을 가동하여 결로를 예방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저수조, 근린생활시설 기계실, 빗물재이용 급수펌프실, 우수조 등의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임의로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지하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에 설치되는 빗물재이용 급수펌프실, 우수조, 기계실(근린생활시설), 저수조, 펌프실, 발전기실, 전기실의 장비류 가동 시 운전 소음 및 진동이 일부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수직동선은 각동 계단실 및 승강기, 근린생활시설 하부에 설치된 레벨단차 연결용 계단(지하 1층 주차장-->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에서 지상층 수직이동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레벨 단차 연결용 계단 및 근린생활시설 계단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용 계단으로 이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 2층에 설치되는 빗물재이용시설인 우수조에는 급수배관이 설치되며 입주 후 사용분은 공통 관리비에 청구 됩니다.

■ 조경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분해되는 결속재료가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의 일부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수목이 고사하지 않은 경우는 결속재료 미제거로 인한 시공하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위하여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부 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부에는 레벨차이에 의해 일부 단 차이 및 안전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 중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경 및 부대시설 사진 및 평면은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단지 내 조경계획 및 부대시설계획 등은 사업 승인도서 대비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부대시설) 및 대지조성 계획(법면 또는 사면, 석축, 옹벽, 배수, 포장)의 위치, 디자인, 색채, 수량, 종류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는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지의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여건 및 유지관리 안정성 여부에 따라 추후 소나무류는 대체 수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커뮤니티공간(놀이터, 휴게공간 등)은 단지 내 기능 강화 및 공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인허가 승인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의 세부위치, 규모, 형태 및 구성이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후 하자를 주장하거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 입구 공용 부분 및 서비스 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 상부 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 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아지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 측면 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 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 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 시보다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내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세대의 위아래 인접 세대의 확장 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마감자재는 외산 OEM 제품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 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시스템 선반, 현관 방화문, 마루, 타일 등)은 본 공사 시 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 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코킹의 위치 및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우물천장,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벽체 종류에 따라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 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 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부의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 높이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 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및 발코니, 실외기실의 경우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본 단지의 특성상 일반분양 세대의 마감, 가전, 가구 구성 등이 조합분양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 바닥마감은 페인트 또는 장판으로 마감되며, 일반가구 상부, 배면, 하부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벽지 도배 공법상 봉투바름으로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각종 몰딩 등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정용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안목 치수
- 주택형의 층고는 기준층 2.85m, 최상층 2.95m이며, 천장고는 2.3m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 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석재/타일
- 인조석재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워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연결 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공극과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 인조석류는 재료의 특성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 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 세대의 창호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 분할의 위치 및 개폐 방향, 위치, 유리 사양, 창호 분할 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내·외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규격,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 사양,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AL도어(유상옵션 품목)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유상옵션 품목)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 사양(제조사, 유리,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등)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합문 커튼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의 프레임 및 하드웨어, 규격,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 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 시 동급이상의 자재로 변경됩니다.
- 세대 내부 일반 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유상 옵션)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반 냉장고 설치 시(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주방 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가구(주방, 일반)의 내부 마감재, 액세서리 및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가구 및 일반 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 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하부장의 액세서리 설치 위치 및 고정 상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하부장의 내부 수납공간 나누기 및 상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 가구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실외기공간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의 유효 길이, 너비,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실은 비난방 공간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 레벨은 해당 부위의 용도에 따라 동일 발코니 내에서 단 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 중 발코니(안방, 주방)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결로 방지 단열재 및 마감 예정으로 견본주택에 반영되어 있는 위치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시설의 접이식 사다리 덮개는 SUS 재질 마감입니다.
- 하향식 피난구실(관계 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 시 상부 세대에서 하부 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의 피난구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설비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환기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조절기(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전기스위치 등)는 제품단종, 개선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침실 벽체 1개소에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 바닥에는 난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내부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됩니다.
- 세대 주방 배기 및 화장실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 및 가스차단기까지 시공되며, 차단기 이후 가스쿡탑으로 인입되는 가스 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필요시 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 배관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 배관을 분기하고 공배관에 배관을 삽입 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 층 세대 인접 공용부 P.D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동별 외부 가스 입상 배관은 3층까지 방범용 배관 커버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 형태, 천장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 수전, 바닥 배수드레인의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는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세탁기 측면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보일러 수리 시 세탁기가 간섭되어 세탁기 이동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형 욕실 환풍기와 유상 옵션 복합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기능상 이유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욕실 내부의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높이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은 경량벽체(방수 등) 및 콘크리트 구조를 바탕으로 마감재가 설치되며, 견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및 유사 시설 계획 등(주변시설계획)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층간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보를 위해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계약자는 차후 바닥구조 변경 시공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본공사시 단지 계획고에 의한 고저차 등 대지 주변현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분리수거함, 외부 계단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본 사업장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가 정산은 없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대지권 등기가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의자, 식탁세트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TV, 세탁기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됩니다.

■ 동별 유의사항
- 각 동에 인접 설치되는 각종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근접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동 옥상 파라펫 및 옥탑구조물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는 실 시공 시 결정됩니다.
- 주동일부 지상층에는 지하 제연휀룸 급기를 위한 제연급기구가 돌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84대로 각 동별 지상 출입구 주변에 분산 설치되며, 별도의 근린생활시설용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는 공동주택용 2개소, 근린생활시설 1개소가 설치되며, 102동 배면에 101동과 공동사용하는 분리수거소가 1개소 설치되며, 104동 배면부에 103동 공동사용하는 분리수거소가 1개소 설치되고 근린생활시설 배면부와 103동 측벽 사이 공간에 근린생활시설 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되므로, 인접한 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의 접근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동은 지하 2층~지상 17층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 단지 중앙에 어린이 놀이터가 2개소 위치해 있어 인접한 주동의 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주출입구 주변으로 주차장 및 발전기실, 전기실 등 급기DA, 배기DA, 제연휀룸용 DA가 설치되어 최하층 일부 세대 및 주동 진출입 시 급기, 배기팬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에 면해있는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 주동 출입구 장애인 램프가 주동출입구에 설치되며,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은 북측 출입구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주차 램프가 주동 하부로 연결되며, 인접 저층부 일부 세대는 차량의 통행, 경보음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호라인 우측편에는 용역휴게실 및 맘스스테이션, 경비실이 설치되며,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4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진출입 동선과 인접하여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으며, 각동 지하층 보행 진출입에 차량의 통행으로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좌측 10m 외부 도로의 레벨은 단지 지반층 레벨보다 약 2.9m높은 위치에 형성되고 외부 보도 및 차도에서 바라보는 시선 차단을 위하여 차단용 식재가 설치되어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배면에 인접한 8m도로의 레벨은 단지 지반층 레벨보다 약 0.37m~2.4m 높은 위치에 형성되고 외부 보도 및 차도에서 바라보는 시선 차단을 위하여 차단용 식재가 설치되어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좌측 10m 외부 도로의 레벨은 단지 지반층 레벨보다 약 2.9m높은 위치에 형성되고 외부 보도 및 차도에서 바라보는 시선 차단을 위하여 차단용 식재가 설치되어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정면부는 공공에 개방되는 개방형 광장이 설치되며, 지구지정 진행시 조건 사항으로 개방형 광장을 바라보는 부분에 시선 차단용 식재 등이 설치되고 광장 인접세대는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남동쪽 방향으로 남측 출입구가 설치되며, 차량 진출입으로 인접 저층부 일부 세대는 차량의 통행, 경보음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1호, 2호, 3호, 4호 라인의 주동 출입구의 장애인 램프 진입부 및 주동진입구 주변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기 DA가 설치되어 팬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3호, 4호 라인의 주동 출입구는 주동 및 주차장 설비 계획으로 주동 출입을 위한 계단 및 장애인 램프에서 자동문 까지의 거리가 다른 코어보다 거리가 멀게 설치되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모형 및 도면 등을 확인하셔서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주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12대(새마을 경로당 1대 포함) 및 공동주택 전기차 급속충전소 4개소가 설치되는 지상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며, 차량의 진출입으로 저층부 일부 세대는 차량의 통행, 경보음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야간 빛공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호라인 측벽 옆으로 근린생활시설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호라인 측벽 옆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이 설치되며, 해당시설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해당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냄새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화장실 통기관으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호, 2호 라인의 1층 2세대(84타입)는 해당 세대의 전면부 근린생활시설 레벨 형성 및 우천 시 우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른 세대 보다 전면부 창(거실, 침실1,2, 발코니1)의 하부 턱이 330mm 더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일반 세대 보다 창의 높이가 330mm 낮게 설치되므로 이점 견본주택 모형 및 비치된 도면 등을 확인하시고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1호, 2호 라인의 전면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레벨 계획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지붕 부분이 약 315mm정도 돌출되게 설치되며,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3호, 4호 라인의 주동 출입구는 주동 및 주차장 설비 계획으로 주동 출입을 위한 계단 및 장애인 램프에서 자동문까지의 거리가 다른 코어보다 거리가 멀게 설치되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모형 및 도면 등을 확인하시어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사무소, 시니어클럽(경로당), 북클럽(작은도서관)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인접한 주동의 세대는 소음, 분진,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모형도, 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하신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옹벽,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와 인접한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차량 진출입 램프 상부에 있는 세대는 차량의 통행, 경보음 등으로 진동,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 하신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옥상 및 옥탑층에 설치되는 의장용 구조물, 각종 설비 및 부속시설물 등은 강풍 등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상층 및 인접 세대에 생활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운행 및 기계장치 작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최상층 및 승강로·승강기 기계실과 인접한 세대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출입구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야간 차량 진출입 시 차량 전조등에 의한 빛 공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인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및 104동의 전 층(1~17층, 총 17개층) 구간 중 2호 세대(안방)와 3호 세대(침실2) 사이, 그리고 4호 세대(침실2)와 5호 세대(안방) 사이에 발생하는 사공간은 주택공급면적 및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공용부(공동소유 면적)입니다.

■ 세대 / 규격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된 수전류, 소방배관,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발코니 수전 스프레이건용 밸브를 잠금 조치하여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 잠금으로 인한 동파 발생 시에는 입주자의 부주의로 간주 되어 보수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산정된 예비인증 결과이며, 향후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외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세대는 하자 보수 시 인테리어 마감의 원상복구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 이의제기를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가전제품(식기세척기, 빌트인냉장고 등)은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설치되며, 고장 및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에 A/S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 선택품목

- 유상 옵션 품목 및 선택 옵션 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유상 옵션 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각 평형별 유·무상 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및 기타 별도 유상 옵션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유·무상 옵션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 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 상판 가스 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가구 및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84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타입)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공품목, 가구 디자인 및 유상옵션 항목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유·무상 옵션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 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유상 옵션),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 형태 및 가구 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도서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 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바닥 배수구, 온도조절기, 천장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수량,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 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향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유닛,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설치)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 조경 및 식재, 차·보도 선형,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 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 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수량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사양, 수량, 위치)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사진, VR 등은 견본주택 오픈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 상품 및 유상 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VR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 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 배치,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 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 변경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 품목(유상 옵션) 등을 대부분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 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 배선 관련 제품과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VR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컬러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유상 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발코니는 실 시공 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 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 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합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경로당, 경비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 설치 예외에 해당하여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시설 설치가 불가한 일부 세대에는 완강기 등 대체 피난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예정일 : 2029년 05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폭염, 한파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설계도서와 상이한 지질여건,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및 신설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을 제공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및 MDF실, 시니어클럽(경로당), 북클럽(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경비실1,2, 맘스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1,2, 행신 새마을회 경로당(기부채납시설)

13 기타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유효높이) :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이상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건축물의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내진능력의 표기 방법 중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Ⅰ등급	Ⅶ-0.2039g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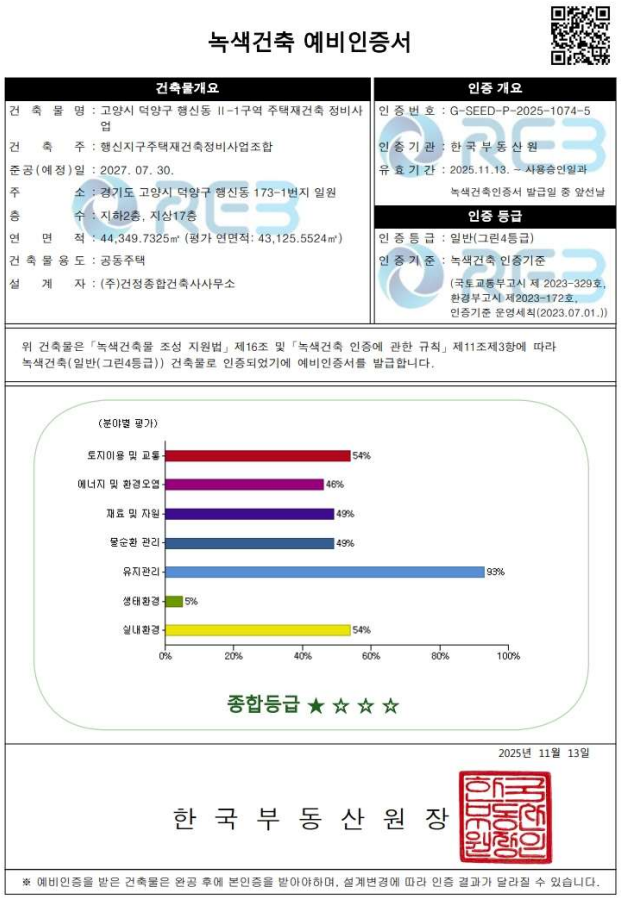
- 각 항목별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적용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8호, [2016.11.2. 시행]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난방열효율 91%)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는 예비 인증으로서 공사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 인증서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ㅣㅣ-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인 증 번 호	G-SEED-P-2025-1074-5
건 축 주	행신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 증 기 관	한 국 부 동 산 원
준공(예정)일	2027. 07. 30.	유 효 기 간	2025.11.13.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인증 등급	
층 수	지하2층, 지상17층	인 증 등 급	일반(그린4등급)
연 면 적	44,349.7325㎡ (평가 연면적: 43,125.5524㎡)	인 증 기 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7.01.))
건 축 물 용 도	공동주택		
설 계 자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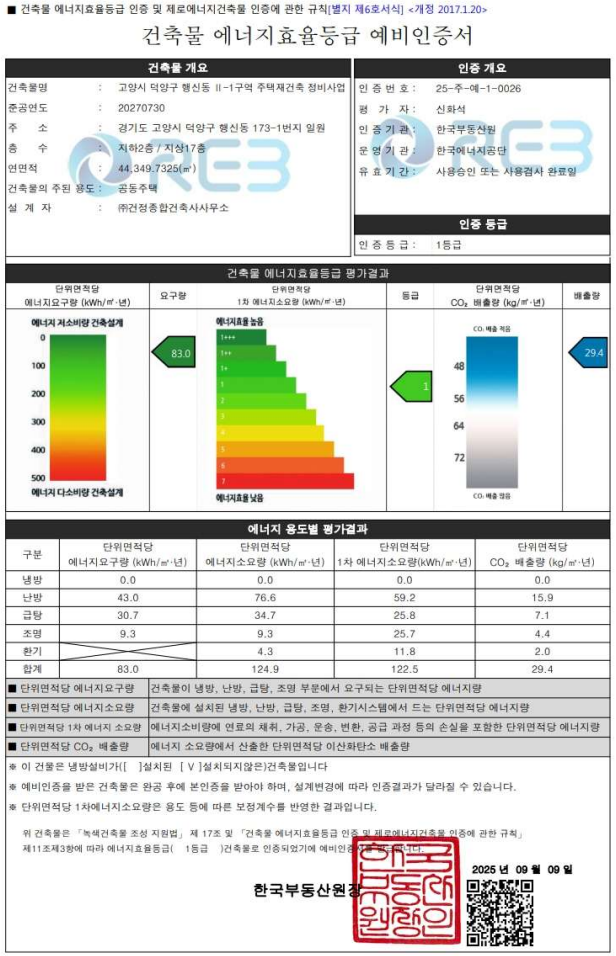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ㅣㅣ-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인 증 번 호	25-주-에-1-0026
준공연도	20270730	평 가 자	신화석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인 증 기 관	한국부동산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17층	운 영 기 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44,349.7325(㎡)	유 효 기 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 계 자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인 증 등 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83.0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 낮음	1	CO₂ 배출 적음 48 56 64 72 CO₂ 배출 많음	29.4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3.0	76.6	59.2	15.9
급탕	30.7	34.7	25.8	7.1
조명	9.3	9.3	25.7	4.4
환기		4.3	11.8	2.0
합계	83.0	124.9	122.5	29.4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에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 년 09 월 09 일

한국부동산원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 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6-101-0006700 호	₩ 47,881,912,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광이에프	㈜서광이에프	㈜서광이에프
사업자등록증번호	214-81-15867	232-81-01003	232-81-01003	232-81-01003
감리금액	1,455,194,400	170,000,000	65,000,000	115,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행신2의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한신공영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5971-0002118	110111-0075683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97, 301호(행신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시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분양 홈페이지 : https://gy-thehue.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1

■ 분양문의 ☎ 02-3159-3428